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59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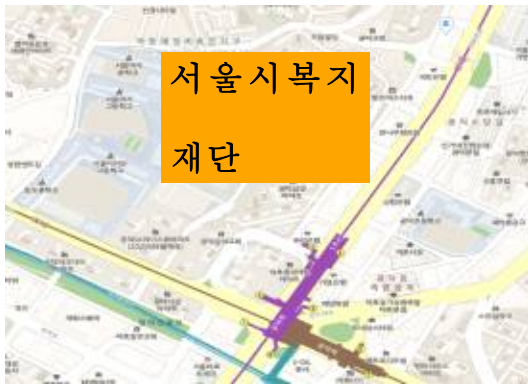
### 1)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m<sup>2</sup>, 건물연면적 10,830.25m<sup>2</sup>

- 위치도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3) '21년 총 소요예산(안) : 57,401,674천원

4) '21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39,967,537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7,434,137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 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이하 “복지재단”)의 2022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2 서울시 복지재단 일반현황

##### 가. 서울시 복지재단 현황 및 개요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었음.

##### 1. 조직 및 인력 관련

- ‘21년 현재 복지재단은 1전략관·2실, 2본부·1실, 3센터·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통전략관은 경영전략, 정책, 역점사업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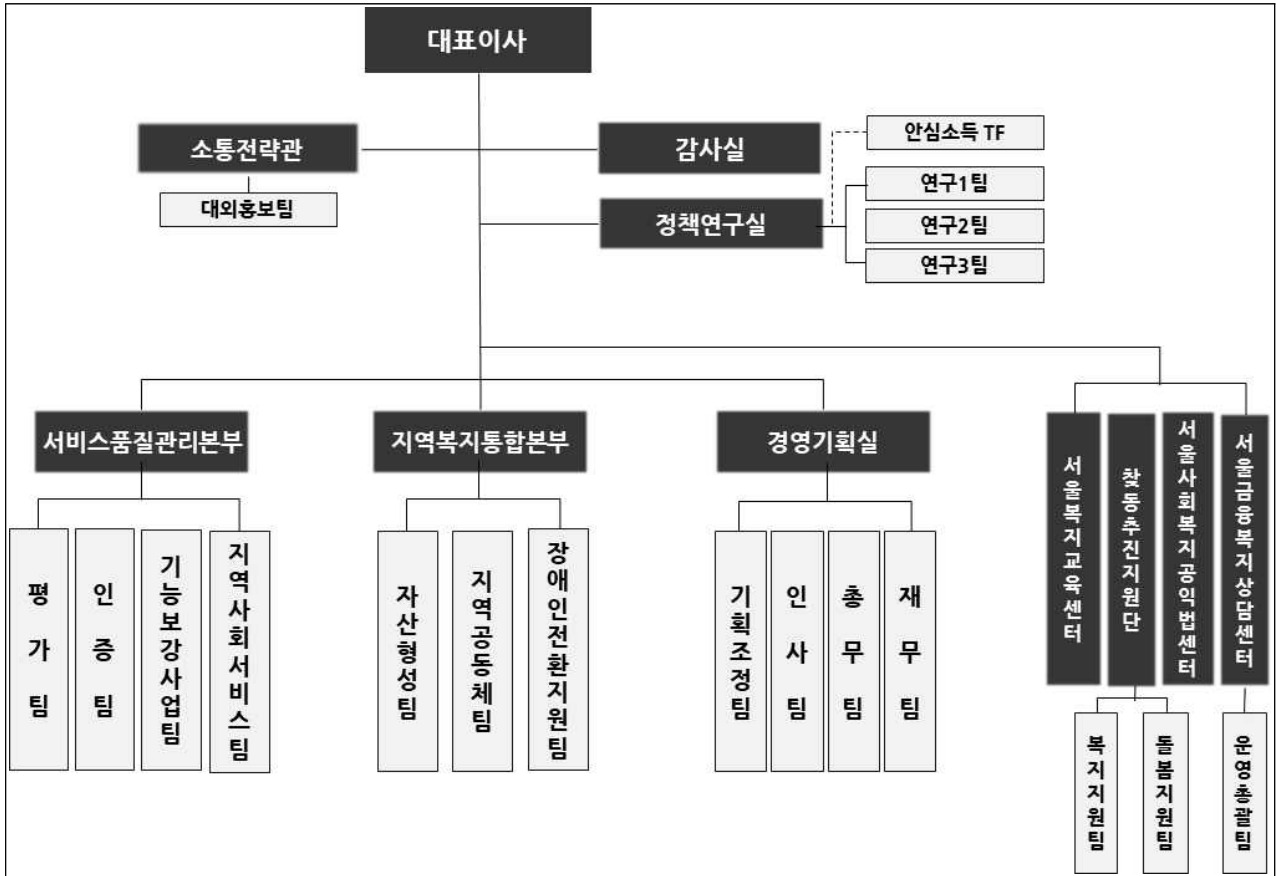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내부 소통·갈등조정 및 외부 전략적 소통·협치, 재단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정책연구실은 2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감사실은 대외감사 수감,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서비스품질관리본부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좋은돌봄인증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강화를 하고 있음.
- 지역복지통합본부는 지역중심 복지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영기획실은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인사관리, 채용, 회계, 계약, 결산 및 지출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이 밖에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서울복지교육센터, 찾동추진지원단(복지지원팀, 돌봄지원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총괄팀)가 운영되고 있음.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1. 8. 18. 기준)



○ 현재 인력 정원은 180명, 현원 178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표

(’21. 8. 18.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일반직 · 특정직								임피제 별도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미화직	
정원	180	1	179	2	10	22	26	29	56	32	2	-
현원	178	-	178	2	9	23	26	26	39	49	2	2

※ 기간제근로자 28명 별도

## 2. 예산 관련

- 집행부는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복지재단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복지재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은 재단 예산의 많은 부분이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현재와 같이 복지재단의 수입이 보조금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책연구 및 경영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수행을 수행에 따라 정책연구실의 기능과 관련한 인력 및 과제(예산)이 쏠림이 예상됨. 이는 예산 심의 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표> 서울시 복지재단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 계	50,349	45,155	38,018	35,400	32,734
출 연 금	41,835	38,636	32,359	26,072	21,483
사 업 수 입	480	464	510	510	610
사 업 외 수 입	2,182	2,213	2,166	3,390	3,710
잉 여 금	5,852	3,842	2,983	5,429	6,931



- 분야별 주요사업비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반회계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등),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에서 재단의 고유 업무인 정책연구 업무의 사업비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도 복지재단의 정책연구 추진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향후 복지재단의 예산 및 사업 편성 시 정책연구 부분의 비중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2021년 서울시 복지재단 분야별 사업비 현황(세출예산 중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사업비 구성			기금회계 사업비 구성		
예산과목	사업비	비율(%)	예산과목	사업비	비율(%)
합계	9,170	100	합계	21,228	100
선도적복지정책개발	1,230	13	서울꿈나래통장	1,578	7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1,898	21	희망두배청년통장	14,196	67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3,601	39	중증장애인이룸통장	4,594	22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496	5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	4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521	6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00	0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1,424	16			

### 3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복지재단의 출연근거<sup>2)</sup>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3)</sup> 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출연동의안은 출연여부(예산안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추진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따져 봐야 함. 또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59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 건물면적 967.12㎡, 건물연면적 10,830.25㎡
  - 위치도



위치도



건물현황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등

다. '22년 총 소요예산(안) : 57,401,674천원

라. '22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39,967,537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7,434,137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품질개발과 품질강화,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공공성에 기반한 특화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박기범 (☎ 2133-7315)